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21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이수진・박홍배・이기헌

김동아 · 최기상 · 민병덕

백승아 · 김현정 · 임미애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11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제7조(임원) ①		
호의 임원을 둔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비상임이사 <u>11명</u> 이내	3 <u>12명</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	4		
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			
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			
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		
	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		
	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u>를</u> 받은 사람 1인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